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8호

[심의일:2026.08.14]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장지수증권(ETN)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장지수증권(ETN)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입니다.

| 구분        | 상장지수증권 (ETN)                               | 상장지수펀드 (ETF)                                          |
|-----------|--------------------------------------------|-------------------------------------------------------|
| 법정성격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증권                                                |
| 만기        | 있음                                         | 없음                                                    |
| 발행주체      | 증권회사                                       | 자산운용사                                                 |
| 신용위험      |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 신용위험 없음                                               |
| 기초지수 구성종목 | 주식형의 경우 최소 5 종목                            | 주식형의 경우 최소 10 종목                                      |
| 특징        | 발행사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br>기초지수 수익률 지급<br>(제비용 차감) |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위해<br>운용하는 펀드 성과 지급<br>(제비용 및 운용 상의 비용 반영) |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 Q1. 상장지수증권 투자를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 ETN거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과객이 '레버리지형 ETN'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ETN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으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됩니다.

### Q2. 상장지수증권 만기 시 어떻게 되나요?

- 상장지수증권 만기도래 시 추종하고 있는 기초지수의 성과가 반영된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투자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 - 보유기간 제비용)를 투자자에게 만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Q3.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증권은 보유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나요?

-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보유기간 누적 수익률은 기초지수 누적수익률의 2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4. 상장지수증권 만기 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8호

[심의일:2026.08.14]

-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의 유동성부족 등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ETN)은 시장상황, 자산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발행사 신용위험]** 상장지수증권(ETN)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금손실위험]**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중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레버리지형'은 기초지수의 변동폭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 '인버스형'은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손실제한형'은 장내 매매에 따른 손실이 제한되지 않음. '손실제한'은 최소 상한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조기상환 조건 달성 또는 만기상환시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 투자설명서 등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발행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괴리위험]**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pm 1$ 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은 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절대값)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단, 배수는  $\pm 2$ 배 이내로 하되,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해  $\pm 3$ 배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제한폭 예시)

- ①  $\pm 0.01$ 배~1배 ETN : 30%
- ②  $\pm 1.01$ 배~ $\pm 3$ 배(레버리지·인버스  $\pm X$ 배) ETN :  $(30 * X)\%$
- 예) 레버리지·인버스 ( $\pm 1.25$ 배) ETN :  $(30 * 1.25)\% = 37.5\%$   
레버리지·인버스 ( $\pm 2$ 배) ETN :  $(30 * 2)\% = 60\%$   
레버리지·인버스 ( $\pm 3$ 배) ETN :  $(30 * 3)\% = 90\%$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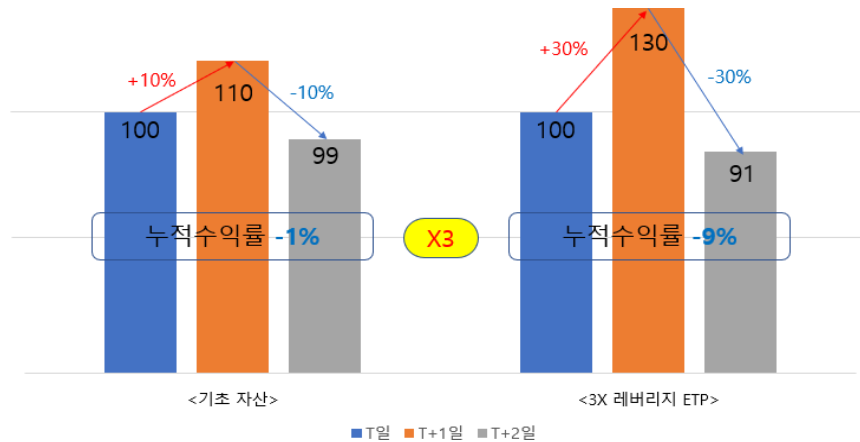
**[복리화 효과 위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별 종가(정산가)를 기준으로 일일 수익률의 2배, -1배, -2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되므로, 추적 배수가 1이 아닌 레버리지, 인버스 ETN을 하루 이상 보유 시, 추적 배수가 반영된 수익률이 복리로 누적되므로 보유기간의 누적 수익률은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같은 배수(2배, -2배) 라면 음의 배수를 가지는 상품일수록 복리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8호

[심의일:2026.08.14]



**[롤오버에 따른 손실위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해외상품 투자위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위험]**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국내기초자산 6% 이상, 해외기초자산 12% 이상)인 경우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또는 호가·매매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3매매일 적용(해제조건 미충족 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괴리율 발생위험]** ETN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가 달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가치에서 이격된 가격으로 투자할 경우 지수의 움직임과 투자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 결정 시 실시간 지표가치와 괴리율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위험]**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증권회사는 제한적으로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거래규모 미달 등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정규시장 종료 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 종료시점 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 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 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합·분할위험]** 발행증권회사는 ETN의 병합·분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등을 위해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비용 발생위험]**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이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위험은 종목별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등급

###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당사는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품위험등급 | 1등급<br>매우 높은 위험 | 2등급<br>높은 위험 | 3등급<br>다소 높은 위험 | 4등급<br>보통 위험 | 5등급<br>낮은 위험 | 6등급<br>매우 낮은 위험 |
|--------|-----------------|--------------|-----------------|--------------|--------------|-----------------|
| 투자자성향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ETN    | ETN             |              |                 |              |              |                 |

### [투자자 성향별 투자적합상품]

| 투자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적합 상품 | 전체 상품 | 3등급 이하 상품 | 4등급 이하 상품 | 5등급 이하 상품 | 6등급 이하 상품 |

##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계약기간은 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근거에 따라 해소하며,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 약정해지 신청을 한 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 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https://kakaopaysec.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8호

[심의일:2026.08.14]

## 서비스 신청 조건

### [기본예탁금]

- 레버리지 ETF/ETN(이하 'ETP') 거래시 기본예탁금을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는 회사가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ETP 거래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기본예탁금   | 적용 기준                                                                                                              |
|------|---------|--------------------------------------------------------------------------------------------------------------------|
| 1단계  | 면제      | 레버리지 ETP 거래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아래 기준 모두 충족<br>· 지난달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구매 합산 금액 1,000만원 이상<br>· 최근 3개월 평균 자산 500만원 이상    |
|      | 500만원   | 레버리지 ETP 거래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아래 기준 중 하나만 충족<br>· 지난달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구매 합산 금액 1,000만원 이상<br>· 최근 3개월 평균 자산 500만원 이상 |
| 2단계  | 1,000만원 | 레버리지 ETP 최초 거래 고객 또는 1, 3단계 미해당 고객                                                                                 |
| 3단계  | 1,500만원 | 연체 등 고객 위험 관리 필요 시                                                                                                 |
| 단일종목 | 3,000만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추가 매수 시                                                                                            |

- 기본예탁금 산정 시 원화예수금 및 주식 등의 대응가액이 포함됩니다.
- 기본예탁금 단계는 매월 2일에 새로운 단계로 반영됩니다.
- 최초 레버리지 ETP 등록 신규계좌는 90일 후 첫 반영 전까지 2단계가 적용됩니다.
- 연체 등 관리 대상 고객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추가 매수시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일괄 3,000만원 적용)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추가 매수시에는 기본예탁금 산정시 원화예수금(주식 등의 대응가액/미결제매수정산금액/미결제매도정산금액/매도담보대출금액 제외)만 반영됩니다.

### [사전교육 이수]

| 거래 상품          | 필요 교육                                                                                     |
|----------------|-------------------------------------------------------------------------------------------|
|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 금융투자협회「국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 금융투자협회「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추가 교육」<br>(단, 26년 5월 21일 이전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 [모의거래 이수]

| 거래 상품        | 필요 교육                                                                                         |
|--------------|-----------------------------------------------------------------------------------------------|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 한국거래소「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이수<br>(단, 26년 8월 19일 이전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모의거래 이수 면제) |

- ※ 당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제도를 준비중으로 개인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면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는 검토 결과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이미 동일 유형 상품을 거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타 금융기관 거래 이력이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개인전문투자자로 확인되는 경우 (타사 확인서 제출 시)

#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28호

[심의일:2026.08.14]

|                            |                                                                                                                                                                                                                                                                                                                                                                                                                                                                       |                                                                                                     |                                              |                                                     |
|----------------------------|-----------------------------------------------------------------------------------------------------------------------------------------------------------------------------------------------------------------------------------------------------------------------------------------------------------------------------------------------------------------------------------------------------------------------------------------------------------------------|-----------------------------------------------------------------------------------------------------|----------------------------------------------|-----------------------------------------------------|
| <b>민원처리·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b> | <p>상품 및 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a href="https://www.kakaopaysec.com">https://www.kakaopaysec.com</a>) &gt;&gt; 고객센터 &gt;&gt; 소비자보호포털 &gt;&gt; 민원접수</li> <li>-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a href="https://www.fcsc.kr">https://www.fcsc.kr</a>)</li> <li>-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s://www.kofia.or.kr">https://www.kofia.or.kr</a>) &gt;&gt; 투자자지원센터 &gt;&gt; 분쟁조정제도</li> </ul> |                                                                                                     |                                              |                                                     |
| <b>금융소비자 권리안내</b>          | 구분                                                                                                                                                                                                                                                                                                                                                                                                                                                                    | 위법계약해지권                                                                                             | 청약철회권                                        | 자료열람요구권                                             |
|                            | 내용                                                                                                                                                                                                                                                                                                                                                                                                                                                                    |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 ETN 해당 여부                                                                                                                                                                                                                                                                                                                                                                                                                                                             | X                                                                                                   | X                                            | O                                                   |
|                            | 신청방법                                                                                                                                                                                                                                                                                                                                                                                                                                                                  | -                                                                                                   | -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
| <b>금융사기 예방</b>             | <p>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li> <li>2.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li> <li>3.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li> <li>4.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s://pd.fss.or.kr">https://pd.fss.or.kr</a>)</li> </ol> <p>※ 금융사기란?<br/>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p>                                                 |                                                                                                     |                                              |                                                     |